第284回國會 (定期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11月20日(金)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3.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4. 在外公館收入金등직접사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6. 在外同胞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7.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管理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8. 領海및接續水域法 일부개정법률안
9.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 동의안
10.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1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
2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청회 개최의 건

審査된案件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 3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2
23. 공청회 개최의 건 ····· 13
3.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4. 在外公館收入金등직접사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6. 在外同胞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7.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管理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8. 領海및接續水域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이한성·유성엽·구본철·현기환·박종희·강석호·이진삼·나경원·김성순·이상민 의원 발의) ····· 14
9.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 ····· 14
10.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김충환 의원 외 32인 발의) ····· 29
1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신낙균·최영희·김재균·강창일·송영길·김종률·양승조·유성엽·이용섭·문희상·김성곤·장세환·김성순·정세균·김영진·이성남·서갑원·강기정·송민순·문학진·천정배·김상희·김재윤·김춘진·최문순·전혜숙·박은수·박선숙·이해봉·안민석·박주선·정장선 의원 발의) ····· 29
1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원유철·배영식·김정권·유승민·이한성·조윤선·임두성·이종혁·홍정욱·배은희·고승덕·정진석·김성태·정병국·박선영·정옥임·이범관·신영수 의원 발의) ····· 29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강기정·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세연·김영진·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영아·박은수·박주선·백재현·서갑원·송영길·신낙균·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윤근·유선호·유성엽·이미경·이성남·이용경·이용삼·이용섭·이윤석·이윤성·이인기·이종혁·정하균·조배숙·조승수·주승용·최규성·최영희 의원 발의) ····· 29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두아 의원 대표발의)(이두아·임동규·이성헌·이한성·김효재·조원진·이해봉·원희룡·조전혁·손범규·신상진·김성태·박준선·강용석 의원 발의) ····· 29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김옥이·송민순·공성진·김용구·김영진·강명순·김장수·신상진·이계진·이경재·김창수·이한성·강석호·이종구·안효대·이해봉·임동규·권영세·정진석 의원 발의) ····· 29
17.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강기정·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세연·김영진·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영아·박은수·박주선·백재현·서갑원·송영길·신낙균·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윤근·유선호·유성엽·이미경·이성남·이용경·이용삼·이용섭·이윤석·이윤성·이인기·이종혁·정하균·조배숙·조승수·주승용·최규성·최영희 의원 발의) ····· 30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박선숙·김영진·강창일·김춘진·우제창·김성순·김희철·김영록·박기춘·김재윤 의원 발의) ····· 30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강운태·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영진·김우남·김효석·노영민·박주선·안규백·우윤근·이용삼·전혜숙·주승용·최규성·최철국·최인기 의원 발의) ····· 30
20.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강창일·곽정숙·권영길·김상희·김영록·김영진·김우남·김재윤·김종률·김춘진·문국현·문학진·박선숙·박주선·박지원·백원우·변재일·송영길·신낙균·신학용·유성엽·유원일·이낙연·이미경·이시종·이정희·조배숙·조승수·최규성·최영희·최인기·홍희덕 의원 발의) ····· 30
2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신학용·우제창·유성엽·원혜영·박주선·양승조·박선숙·이시종·이미경·송민순·김동철·문학진·김종률·박은수 의원 발의) ····· 30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석호·강용석·구상찬·권경석·권영진·김금래·김동성·김선동·김성회·김영우·김옥이·김을동·김재윤·김정권·김정훈·김창수·김충환·김태원·김태환·김효재·나경원·박보환·박순자·박준선·서병수·성윤환·손범규·심재철·안경률·안형환·원희목·유일호·이범관·이윤성·이종혁·이철우·이춘식·이한성·장광근·정두언·정병국·정옥임·정진석·정해걸·조전혁·조진형·주광덕·진성호·진수희·차명진·최구식·허원제·현경병·현기환·황진하 의원 발의) ····· 30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10시25분)

○위원장 박진 동 안건들은 지난 18일 제2차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문학진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문학진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제2차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낙균 위원, 이범관 위원, 이춘식 위원, 정동영 위원, 홍정욱 위원과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예산안 기금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을 312억 원 증액으로 수정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감액 12억 3000만 원, 증액 228억 4800만 원 등 총 216억 1800만 원 증액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체적인 감액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선정사업 예산은 1억 600만 원, 글로벌 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예산은 3억 원, 에너지·녹색성장 외교강화 예산은 8억 원, 외교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을 위한 예산 189억 4700만 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 6억 9000만 원,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 등 총 228억 48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청사·관저 국유화를 위한 예산으로 36억 90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 사업 예산의 특수활동비 항목을 예산집행기관인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연례적 예비비 집행 관행을 지양할 것, 국제교류재단의 예산절감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한 워싱턴사무소 유지는 예산 낭비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재단은 워싱턴사무소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 일반회계 5건, 국제교류기금 1건 등 총 6건의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하여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감액 6억 7300만 원, 증액 1085억 7400만 원 등 총 1079억 100만 원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체적인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독일통일 20년 계기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사업 4억 2300만 원, 북한 관련 심층면접 및 설문표준기법 개발사업 2억 원, 개성공단 법제구축 사업 5000만 원 등 총 3건에 6억 73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26억 9700만 원, 통일체험전시관 타당성조사 19억 9300만 원, 남북회담본부 청사 개보수 16억 6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지원 사업 5억 8000만 원, 6·15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민화협 지원사업에 3억 원 등 총 13건, 1079억 100만 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지출 부분에서 당국 차원의 지원 1021억 5700만 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 5억 4000만 원 등 총 1026억 9700만 원 증액 의결하였고, 수입 부분에서도 지출 부분과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부출연금 1026억 9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정책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제와 최종 선정과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이 연구용역 과제를 수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등 총 3건의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으나 민주평통과 통일부 간 유사·중복적인 통일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협조방안 마련과 이의 차별성 있는 운영 등 총 5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결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문학진 소위원장님과 신낙균 위원님, 이범관 위원님, 이춘식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그리고 홍정욱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선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예, 올해 남북협력기금 총액을 얼마로 했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이 2조 2227억인데 16일날 열린 북한방송에서 김정일 남북협력기금 활용 지시 내용 보도를 인용을 해 보면 남한 정부가 조성해 온 남북협력기금을 잘 이용해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고위간부들 사이에 눈먼 돈으로 통용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남북협력기금이 2008년도 집행률을 보면 아주 낮습니다. 총 평균이 한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총액을 2조 2227억 원으로 올렸을 때 이 총액을 높인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북쪽에서는 이것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우리 쪽에서는 2008년에—2009년은 최종 집행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20%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액을 해야 될 이유

를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답변은 특별히 지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답변은?

○송영선 위원 예산 쪽에서 이걸 증액을 시켰을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상 2008년에는 준 돈의 20%밖에 쓰지 않았고 또 북쪽에서는 이걸 눈먼 돈으로 쓰자는 게, 16일날 '눈먼 돈이었다, 가장 쓰기 좋은 돈'이라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더 증액을 시켜줬는지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진 또 질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주선 위원님.

○박주선 위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프간 PRT에 현역장교가 파견이 돼 있느냐 여부를 물었더니 군인이 파견된 것이 아니고 대체병력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파견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5명의 현역장교가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답변을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제가 병력이 파견됐다고 처음에 답변했는데 KOICA 이사장, 주무 기관장인 KOICA 이사장이 '그게 아니고 군의 대체병력이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로 확인했다가 나중에 오후 질의 시간에 다시 그걸 제가 정정해서 바로잡았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주선 위원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FTA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비준 진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자동차 부분 재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대통령의 워딩(wording)이 뭐였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에서 자동차 분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하시는……

○박주선 위원 아니, 대통령 말씀이 뭐였어요, 정확한 말씀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니까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재협상을 하겠다거나 무슨 추가 협상이 아니고 자꾸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한번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국의 불만이다라는 얘기를 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EU도 5만 대를 팔고 EU하고 자동차 문제 협상해서 타결됐는데 뭐가 문제냐, 얘기를 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재협상은 절대 없고 미국 측에서 재협상 요청을 하더라도 한국은 절대 응할 수 없다, 이거 확실한 방침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믿어도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FTA를 위해서 진전된 노력을 하겠다 그 취지는 또 무슨 뜻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국 행정부는 이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 국내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의회를 설득하는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미국 측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꾸준한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 민주당이 노조를 기반으로 해서 설립이,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고 또 자동차, 미국에 있어서의 노조는 자동차업계의 종업원들이 또 근간을 이루고 상당한 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어떤 이유로도 재협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대통령은 이야기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미국에게 재협상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미국은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미국도 그러면 한국은 절대 재협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 얘기는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있었던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미국이 꾸준한 문제 제기를 해 왔다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가 문제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미국 대선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문제가 발산된 건데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해 온 적이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이지요, 미국이 문제를 제기해 오면 이야기를 한 번 들어는 주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를 말씀하신 이유는 자꾸 미측에서는 자동차 분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서비스 분야라든가 농산 분야에서 지금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의 균형이, 이익이 되느냐 이런 데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하기로 한 거니까 미국도 자동차 하나만 따지지 말고 전체를 봐라 하는 얘기이고 또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다. 얘기를 해 봐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겁니다.

○박주선 위원 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 자동차와 관련한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얘기는 전혀 거론된 바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진 예, 5분 아까 드렸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대로……

○김충환 위원 예산 처리하고 하지요.

○위원장 박진 예.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의결한 다음에 제가 질문할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결정족수가 돼야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금 여기 쭉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또 출입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됐을 때 예산안을 먼저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예산안 먼저 의결하세요.

○위원장 박진 그 관련된 질문이 아니시면 나중에 해 주시면 감사……

○송영선 위원 아까 질문한 예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답을 좀……

○위원장 박진 송영선 위원님 아까 질문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1000억 원 증액시켜 주신 뜻을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앞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1000억 원을 증액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여간 남북협력이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 위원 남북협력기금의 경우는 그것은 앞으로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사업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고 개발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표현을 할 때 '눈먼 돈이다. 북측에서 볼 때 눈먼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보기에도 적절치가 않고 또 앞으로 남북협력을 해야 될 북한 측에서 볼 때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눈먼 돈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항상 있었지만 이것을 장관께서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주 진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남경필 위원님.

○남경필 위원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있는데요.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이렇게 심사해서 증액도 시키고 감액도 시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예결위에 가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전혀 논의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올해도 우리 외통위원회에서 곧 의결할 이러한 내용들이 예결위에 가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런 면에서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전체의 노력이 필

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이지만 우리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좀……

UC리버사이드 한국학연구소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 집행 관련해서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이제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UC리버사이드와 저희들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6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입장 정리를, 행정기관과 로펌에 의뢰해서 나름대로 정한 것을 외교부를 통해서 UC리버사이드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쪽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사실상 이 MOU가 체결된다면 그때 논할 문제가 예산인데 미리 우리가 잠정적으로 안은 잡아 놨습니다. 2010년도 우리 예산은 그동안 재단이 시행해 온 기존 사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22여억 원 삭감됐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교육 부분에 26억 원을 증액해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48억 원이 감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동 사업 관련 예산 6억 2200만 원을 마련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축소 조정하면서까지 이 안을 집행하기에는 향후 상당한 무리가 예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리 재단이 고유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무리하게 편성해 놓은 6억 2000만 원은 재단 핵심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별도 10억 원을 의회에서 확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무리하게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나요, 6억 2000만 원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사실 무리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22억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교육예산을 26억 원 증액했고 전체적으로 48억 원이 감소……

○남경필 위원 그러면 지금 MOU 체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 없는 협상을 하고 계시군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전혀 집행할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데 지금 MOU 체결이라는 형식적인 행위를 하고 계신 거군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영옥 동포연구소에 대해서 저희 재단은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만든 예산도 아닙니다. 단지 외교부와 기재부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만든 안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집행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남경필 위원 외교부와 지금,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준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동포재단은 지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아니,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남경필 위원 지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입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예산이 가 있잖아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정상적인 내년도 사업이 안 됩니다.

○남경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명목으로 지금 재외동포재단으로 예산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데로 쓰고 국회에서 또 마련을 해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아닙니다. 그 5억은 지급합니다. MOU만 체결되면 저희들은 지급합니다.

○정진석 위원 제가 지금 추가로 질의를 좀……

○남경필 위원 정진석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박진 발언권은 제가 드립니다.

(웃음)

정진석 위원님.

○정진석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리버사이드대학에 우리가 김영옥연구소 설립기금으로 해 가지고 5억, 10억, 15억을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저희들은 그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위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분명히 그 속

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동의한 거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단지……

○정진석 위원 재단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셨어요. 저도 그때 예산소위에 들어가서 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재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걸 하게 되면 LA 사회에서 숙원사업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진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1년 이상 끌어오는 동안에, 지금 이사장께서는 이 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갖다가 굉장히 무시하고 계세요. MOU만 체결되면 다 정상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그동안 쭉 설명을 해 오시다가 지금 답변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이상한, 해괴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아닙니다. MOU 체결되면 집행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진석 위원 그렇지요. 집행하는 것이고, 작년에 세웠던 예산대로, 계획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맞습니다.

○정진석 위원 MOU 체결이 지금 미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닙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정진석 위원 그리고 MOU 체결도 많은 진전을 보았지요, 그동안 교섭을 잘 해 가지고. 그렇지요?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금년 말에는 체결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걸림돌이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저희들이 많이 완화를 했지요.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급적 사업이 안 되게 재외동포재단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들어가세요. 장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이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언급에 의하면 자기네들과 관계가 없다, 외교부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장관, 답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정진석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알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가지고 예결위까지 통과된 사업이 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리버사이드대학 측에서 매칭펀드의 개념으로 제공하기로 한 그 내용, 또 동포사회에서 모금하기로 한 내용, 이것이 당초 약속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 100만 불 얘기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외교부 당국자가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하기로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포사회에서 100만 불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먼저 재정을 투입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동포들이 100만 불 만드는 것이 선제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외교부가 이해된 사항이라고 저는 봤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급적 조속히 5억 집행이 되도록,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재외동포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내년에 집행할 10억 거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지금 국회에서 결의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국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행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정진석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그러면 지난해 5억 배정받았는데 한 푼도 지금 집행이 안 됐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금년에는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내년 예산에 10억을 계상해 주시면……

○정진석 위원 그중에서 6억 2000 정도가 통과되었단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MOU가 체결이 되면 나머지 투입할 부분은 일괄해서 잔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수 있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2009년도 UC리버사이드 예산이 5억 원이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 답변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정부 예산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재외동포재단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 위원회는 알고 있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또 예산안,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안 상정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이건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요. 민주평화통일사무처 법령을 위반하면서 부의장이며 간사들에게 월정액, 그것도 부의장은 월 550만 원, 간사들은 급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법령 위반된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하나도 증감 없이 소위에서 다 전액 그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소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이것을 관철시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 정부는 지난 정부하고 다른 점이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과 명령과 그리고 예산지침에도 어긋나는 이런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 이렇게 그대로 증감 하나도 없이 법에 위배되는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주셨는지 한번 소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관님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소위원장이 안 계시지요? 문학진 간사님 안 계신데, 우리 장관님 혹시 먼저 하실 수 있으면 먼저 답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민주평통이……

○박선영 위원 아니요, 당사자는 답을 할 자격이 없고요. 장관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이것은 우리 민주평통에 관한……

○박선영 위원 통일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전혀 관계없는……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민주평통……

○박선영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민주평통은 독립기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민주평통은 독립기관입니다.

○박선영 위원 독립기관이어서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 상정할 때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박선영 위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것을 스스로 삭감을 하시든지 새로 편성을 해서 내시든지 아니면 소위원회 열렸을 때 이런 지적이 매년 있었고, 특히 올해 박선영 위원으로부터 강한 질책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소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 까닭과 과정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법과 명령, 지침에도 어긋나는, 지금 정부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지난번하고 똑같을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20 몇년 동안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

이 정부가, 국민이 왜 정권을 바꿨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잘못됐던 것은 바로잡겠다고 바꿨고 그래서 늘 외치는 것이 법치인데 28년 동안 똑같은 예산을 책정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대로 해 달라, 이것을 우리 외통위가 그대로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 또 우리 소위원장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송영선 위원 외통부 예산 중에 두 가지인데, 2005년 APEC회의 때 670억이 들었는데, 내년에 G20 확실히 개최할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영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지금……

○송영선 위원 또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송영선 위원 아니, 다른 질문이 또 있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PKO 파병할 때마다 자꾸 예비비로 갖다 대는데 아프간 파병 물론 아직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아프간 파병 예산도 전혀 안 잡아놨어요.

두 항목에 대해서 예산 없이 이것을 전부 다 전액을 예비비로 쓸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G20가 확정된 것이 지난 9월 하순이었기 때문에 정부 원안에 그것을 반영할 시간적인 것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별도로 G20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국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것은 외교부뿐만 아니고 전 부처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PKO 이 문제, 또 아프간 예산은 아직 규모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현재 정확히 국회에 예산을 신청할 만한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아마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무조건 예비비로 쓰지 않고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예산 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정의화 위원 제가 한마디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정의화 위원님.

○정의화 위원 지금 예산에 외교력 강화를 위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국유화 관련, 제가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년에 새롭게 국유화를 하고자 한 공관이나 이게 얼마쯤 되고 어디어디입니까? 그것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불가리아 관저 국유화사업 370만 불 하고요, 베트남 공관 청사 국유화사업……

○정의화 위원 그것밖에 없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블라디보스토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토하신다고 장관께서도 저희한테 확인하고 하셨는데……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재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내년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남경필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예결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주도록 국회의장님 또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께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박선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민주평통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러한 예비심사를 했는데 지금 소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이 나중에 우리 박선영 위원님께 이런 심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록에는 문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명기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영 위원 이견 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한 사람 반대는 남겨 주세요.

○위원장 박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선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소관 부처 장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사업 그리고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등 총 10여 개 예산이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증액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외교역량 강화 및 외교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외교통상부 업무 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남은 예결위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상히 심사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최근 변화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합의, 그리고 중장기 통일 대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고 증액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통일부의 의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또 예산안이 일부 감액 조정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강화, 인도적 지원 등의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정하지만 통일부는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격려와 기대를 항상 기억하면서 유연한 자세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통일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건설적인 제안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통일부 예산

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들어 내년도 업무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앞으로 예결위 심사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오늘 심의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구체적 증감 내역이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07분)

○위원장 박진 오늘 의결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의결은 다 했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만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과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다음 연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아닙니다만 위원회 운영일정을 감안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법안을 오늘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개진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진 의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문학진 위원님!

○문학진 위원 여기 법안 22번,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이 민주평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금 내놓으셨는데요. 개정안을 보니까 골자가 첫째는 평통 자문위원 숫자가 현재는 7000명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2만 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것인지?

민주평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조직이 좀 과도하게 비대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민주평통이 하는 역할이 이름에 걸맞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또 심지어는 현재와 같은 민주평통은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자문위원 숫자를 엄청나게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정안을 보면 사무처장을 정무직화한다, 이게 또 한 가지 골자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사무처장을 정무직화하는 의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 관련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정 흐름과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업무추진, 이것을 위해서 사무처장을 정무직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평통이라는 것은 자문기구지요. 그런데 자문기구의 사무처장을 정무직화하는 의도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애초의 설립 정신과는 위배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무처장을 정무직화해 놓으면 그렇게 해서 통일 관련 국정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면…… 통일 관련 업무의 소관 부처는 통일부지요? 그러면 업무중복에 따른 충돌·갈등 가능성

이 높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윤상현 위원님이 내놓으신 민주평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체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민주평통은 초당적인 헌법기구지요. 이것을 손질을 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법안소위에 넘기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회의에서 좀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 민주평통법안에 대해서 문학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소위는 물론이고 상임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상정을 하고 전체회의에서 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결사항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PRT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의사일정 23항으로 상정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23. 공청회 개최의 건

(11시13분)

○위원장 박진 의사일정 제23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청회 주제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확대에 관한 공청회로 하고, 공청회 일시나 또 진술인 선정 이런 필요한 사항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추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영선 위원 위원장님, 여기……

○위원장 박진 송영선 위원님!

○송영선 위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저는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반영시킬 시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에서 현지로 파르완주를 지금 거의 확정을 해 놓고 있는데 현지 실사단이 완전히 돌아와서 평가를 한 후에 공청회를 열어야 실질적인 공청회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진 송영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확대에 관한 공청회 일시와 또 진술인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 정해서 시행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오셨어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외교통상부 차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각수 제2차관이 제1차관에 임명이 되었고 천영우 주 영국 대사가 제2차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두 분 차관님 계시면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신 차관님, 한마디 하시지요, 마이크 앞에 나와서?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방금 공항에 도착해서 위원회에 왔습니다.

2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소임을 마친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1차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속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 천영우 차관님 인사하시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천영우 천영우 제2차관입니다.

이번에 제2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통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잘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법률안과 동의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在外公館收入金등직접사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在外同胞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管理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領海및接續水域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이한성·유성엽·구본철·현기환·박종희·강석호·이진삼·나경원·김성순·이상민 의원 발의)

9.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

(11시17분)

○위원장 박진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 이상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의원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키로 했습니다.

참여국은 PSI 차단원칙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나 테러집단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관련 물자의 국제적 거래를 해상이나 육상, 공중에서 검색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회원국 국내법규를 강화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심선박의 화물에 대해서 압수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취하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해통항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영해및접속수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법 제5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사례를 각호로 규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원칙의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제2항제14호를 신설해서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부품의 수송의 경우에도 무해통항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외국선박이 제5조 통항규정을 위반할 시 기존의 정선·검색·나포 외에 압류조치를 추가로 규정해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및 거래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제가 제안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를 대신해서 의사일정 3항, 4항, 5항, 6항, 7항 및 9항, 이상 6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서 일반 국민이 동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간결성·함축성과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법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꿀 계획입니다.

둘째,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고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의 가입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의정서의 가입을 통하여 1992년 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형 유류 오염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류 오염사고의 총 보상액이 1992년 기금협약의 보상적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있어 피해자들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할 경우 추가기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둘째 추가기금에 대한 연차 분담금은 동 추가기금의 협약에 가입한 체약국에서 연간 15만t 이상의 유류를 수령하는 자가 부담하고, 셋째 추가기금은 유류 수령에 관한 통지의무를 준수한 체약국의 영토,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체약국이 정한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취해진 예방조치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오니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들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의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법률안 및 동의안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은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제처 등 정부 각 부처와 국회사무처, 법원, 국어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국민 누구나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동 법률안들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법률의 용어 중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일본식 한자어, 한글·한자 병기가 필요한 용어, 풀어써야 할 축약어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 내용상의 변화는 수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 문장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제고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법령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이상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이어서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2009년 5월 26일 우리나라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의 참여를 계기로 영해및접속수역법에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고자 하는 PSI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예를 각호로 규정한 법 제5조제2항에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부품의 수송을 제14호로 추가하고, 둘째 관계당국의 정선·검색·나포 등의 권리를 규정한 제6조에

압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PSI에의 참여를 계기로 영해및접속수역법에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고자 하는 PSI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는 일응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법안과 같이 제5조제2항에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부품의 수송을 추가할 경우 무해통항의 가능성 및 무해통항권 침해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과 국내법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개정된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국제적인 마찰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PSI 차단 원칙은 필요할 경우 관련 국내법 권한 강화를 검토·노력하기로 공약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내법 권한과 관련 국제법 및 체제에 부합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문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곧 참가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법규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유엔해양법협약 및 PSI 차단원칙의 해석상 제5조제2항의 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6조에 압류조치를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 없이 제6조만을 개정하는 경우 법안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4쪽에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비준동의안은 지난 2007년 12월 7일에 태안군 연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오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위의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유류오염 사고의 총 보상액이 1992년 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 기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둘째 추가 기금에 대한 연차 분담금은 동 의정서에 가입한 체약국에서 연간 15만t 이상의 유류를 수령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과 같이 위 국제협약의 보상최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형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14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바 위 특별법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손해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피해복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유류오염으로 인한 국제기금의 보상최고한도액이 약 1조 2000억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국제기금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 지원을 하게 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일부 정유업체 등 민간기업이 그 보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유류오염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선박의 소유자와 그 선박을 통하여 유류 수송을 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얻고 있는 정유업계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피해보상의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타당하므로 의정서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 의정서 가입으로 인하여 향후 정유업계가 부담하게 될 경제적 비용으로 인한 채산성의 악화, 유류가격 인상 가능성 및 다른 나라에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유업계가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정유업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 여부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법률안과 동의안 7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신낙균 위원 잠깐만요.

○박선영 위원 현안질문 해야지요.

○위원장 박진 아, 잠깐……

○문학진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요.

장관님, 잠깐 앉으세요.

○위원장 박진 잠깐 앉아계시지요.

○문학진 위원 뭐 이렇게 급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오후에 외교관 행사가 있어 가지고……

○문학진 위원 여기 외통위 분위기 좋잖아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오늘 의결사항이 여러 개 있어서 현안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현안질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현안질의는 1인당 5분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안 때문에 아까 질의 못 하신 분이 계시면 5분 한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문학진 위원님.

○문학진 위원 외교통상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한미 FTA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얘기해 볼 자세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의 그 말씀은 재협상, 추가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논의가 제기되면 들어볼 의향은 있다 뭐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대통령 말씀하고 통상교섭본부장 말씀하고 말장난 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얘기해 볼 자세가 돼 있다 이것은 미국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추가 요구라든가, 말하자면 재협상이 됐든 추가협상이 됐든 추가로 미국이 요구를 해 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응할 준비가 돼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복잡하게 해석할 것 없이.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 볼 자세가 돼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 말씀은 그것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FTA를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FTA라는 게 산업별의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이나 농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반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양국 간의 전체적인 균형에서 양국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꾸 자동차 문제가 얘기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미국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자꾸 하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아직 한번도 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얘기해라, 들어줄 자세가 돼 있다' 이것은 FTA에 관해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금 취지를 공감하고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저기요, 그러면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서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뭔지 우리한테 얘기가 와 있는 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전혀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노동조합 특히 자동차 노조의 문제 제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같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아직은 없다 이거지요, 구체적으로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문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이 이제 자동차 부문을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 오면 우리가 얘기할 용의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들어봐야 되겠지요.

○문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상의 내용적으로 재 또는 추가협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자꾸 말장난으로 들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앞서가지 마시고, 그러면 들어본다면 우리가 우방국에 서로 문제점을 '얘기도 못 듣겠다, 끝났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

○문학진 위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렇게 죽 봤는데 전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우리가 워싱턴에다가 거액을 들여서 로비업체 지금 두 군데인가 고용을 해서 움직이고 있지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이 계속, 오바마가 후보 시절부터 '문제가 많다 말이야, 불균형이다'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측에서 그것을 추상적, 개념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USTR에서 우리 측에 아무런 그런 미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미대사관에서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한미 FTA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것이 경제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략적으로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하는 점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FTA는 양국의 이익이 균형이 된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국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글쎄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도.

그런데 미국이 자동차 부문을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고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요? 그거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가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곧 한미 FTA 협정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우리가 재협상……

○문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장관님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협상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다면 위원님 말이지요, 우리가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엄청난 많은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협상이 없다는 입장을 정부가 계속 밝히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도록 하는 데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EU하고도, 자동차 문제에서 미국만큼이나 민감한 EU하고도 FTA 협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EU에서는 연간 5만 대 이상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측에서 추가로 요구할 게 뭔가를 미국 정부가 빨리 제시를 해 봐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한 것이지 절대로 무슨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발언시간이 끝났는데요.

차라리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재협상이 됐든 추가협상이 됐든 그런 국면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한테 좀 불리한 분야가 대표적으로 농업 부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지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 그것은 2년에 걸쳐서 양국의 이익이 잘 균형된 협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협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저도 잘 되기를 비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정부 바람대로 잘 돼 오고 있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장관님 여기 나와서 비준 시점을 이미 놓쳤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지금 2007년 6월 30일날 서명을 하고 그동안에 2년 반 가까이 이것이 비준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잘 되기를 빕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남경필 위원 하시고 박선영 위원님 그다음에 박상천 위원님 그리고 신낙균 위원님.

○남경필 위원 장관님, 같은 사안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하여튼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엄청난 불균형이다라고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관계는 변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건 많은 국민들, 언론들 사실상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수용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님의 답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재협상은 없다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런데 재협상이라는 것은 협정문을 고치는 것이 될 테고요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예를 들면 미세조정 또 추가 협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남경필 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 청와대 쪽에서 홍보 라인 관계자가 언론에다가 한 인터뷰를 보면 '협정문은 고치지 않되 미세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부속서에 뭘 넣는다든지 우리가 틈을 열어 놨으니 이야기를 해 보자. 합의문을 고치는 것은 재협상이다. 그러나 합의문을 고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재협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당신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만 자꾸만 요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재논의할 수는 있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의 입장에서 그런 추가 논의를 하겠다 이러면 미국이 지금 뭐를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마음 놓고 해 보라는 것은 인비테이션(invitation), 초청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 장관을 앞에 놓고 이것이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하기가 참,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는 건 재협상이건 추가협상이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게 현 정부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입장, 뜻을 분명히 알겠고요.

국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쇠고기 협상 때도 재협상을 통한 협정문의 수정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가 논의를 해서 문제점들을 바로잡았던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FTA의 진전을 위해서, 통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동차 문제가 꼭 재논의, 재협상이 아닌 추가 협의나 재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상당히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불리한 협정이었다, 협상이었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농업 부분, 서비스 부분, 구체적인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불리하게 체결됐던 내용들을 함께 논의할 준비는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그랜드 바겐을 세 번이나 언급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도 그랜드 바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지요? 오로지 본인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포괄적 해결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긴밀한 공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박선영 위원 그리고 그 발표문도 보면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고 공동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합의해 나가겠다, 공동 접근해 나가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쓴 용어는 '커먼 어프로치(common approach)'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했다,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요즘 유명한—성함을 입에 올린 건 아닙니다—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심이 정말 이 정부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외교부가 털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긴밀한 공조도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FTA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통상 업무를 주관해야 할 장관으로서는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라고 밖에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세는 저는 인정합니다. 외교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그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해서 대통령 별장에 가면서 느닷없이 쇠고기 선물을 안겼습니다. 협상 중이고 마무리도 되지 않은, 그리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국제법상으로 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협정을 맺어서 온 나라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그리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일본에 가서는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하고도 제대로 대접 못 받았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예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선물을 또 느닷없이 안겼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하기 전에 쓴 기사를 보면 '한국에게 줄 선물은 없다. 그저 정중히 요청하고 오는 일만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중히 요청을 받고 아주 우아하게 거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한미 FTA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렀던 사회적 또 의회의 위신 추락 이런 비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지난해 11월에 이 자리에서 있었던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난리를 치고 대통령이 느닷없이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오픈 톡스(open talks)'라고 썼더군요. 얘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 미국 언론은 지금 전부 우리가 최소한 재협상은 아니어도 추가협상은 하겠다는 그런 여지를 열어 놨다, 오픈 톡스다, 아주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금과 같이 무겁고 신중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가지고 FTA에 불만이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2007년도에 협상할 때 이미 자동차에 관한 한 미국한테 줄 것 다 줬습니다. 자동차세, 배기량, 보험료, 신속분쟁처리절차, 받아들일 것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게다가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 톡스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거면 전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FTA를 앞두고 농민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분야라든지 정말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을 적어도 앞에다 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도 그러면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말을 직접적은 아니어도 우회적으로라도 해 주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느닷없이 말을 해 놓고 나면 미국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용의를 밝힌 것으로 보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들어보는 수준이다라고 장관께서……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런 난리가 나고 나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그다음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교부의 고위 관리들하고 같이 이례적으로 브리핑 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장관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대통령에게 외교 훈수는 좀 두십시오, 외교적 레토릭(rhetoric)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도대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국익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장관 답변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 바겐 관련해 가지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저는 앞으로 공동접근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는 6자 프로세스 내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핵무기에 관한 해결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 이상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하겠다는 걸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FTA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서비스 업계나 산업계나 또 농민들도 역시 FTA를 반대하고 이것이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것이지 우리가 재협상·추가협상을 하겠다, 무슨 선물이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장관께서는 재협상이나 추가협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이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FTA 내용 중에 미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자기네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박상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자 문답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해를 해 보려고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얘기할 기회를 갖는다는 건 논의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듣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한다는 뜻이고 그 문제는…… 다음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뒤이어서 '그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졌고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자동차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충분한,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충분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것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 다시 논의할 기회를 갖겠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은 적어도 자동차 문제에 관한 한 재논의 할 기회를 미국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곧 재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 하고는 천양지차겠지요.

○박상천 위원 아니, 재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은 안 했지만 재협상, 적어도 추가협상으로 연계될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협상이란 말이……

○박상천 위원 현재의 FTA를 전혀 손을 안 대는 이야기를 미국이 뭐 하러 하려고 하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협상이란……

○박상천 위원 정상회담에서 그 이야기를 왜 꺼내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박상천 위원 FTA를 어딘가 변경하고 싶으니까 형식을 재협상으로 하든지 추가협상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선택의 문제고 그 길을 열

어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쪽을 고치면 또 다른 걸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협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에 캠페인 때 반대했기 때문에 또 의회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한미 양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의회를 설득시키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가 이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양국 국민에 이익이 되고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노력해 가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그 전략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미국이 자동차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좀 얘기 들어 보고 논의하자', 맞습니다. 그걸 바로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하고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추가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박상천 위원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언급은 안 했으니까 그것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면 그런 논의가 현재 무슨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박상천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너무 길게 말씀하시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답답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박상천 위원 재논의를 하는데 그 재논의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소리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건 간에 정부 입장은……

○박상천 위원 재논의 한다는 건 지금 장관도 인정하셨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재논의를 하면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재논의를 무엇 때문에 미국에서 합니까? 그리고 그것 갖고 의회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재논의만 하다 그쳐 버리면 미국 의회가 설득이 되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면 위원님, 자동차의 '자'자도 꺼내지 말라, 저기로 가라 해야 되겠습니까?

○박상천 위원 아니, '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상천 위원 누가 어떻게 답변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럼 우리 정부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상천 위원 정상회담 때 이야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측에 대해서나 공개적으로나……

○박상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측에서 문제가 있다면……

○박상천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추진한다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정부는……

○박상천 위원 물론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블룸버그 통신은 재협상은 없다는 한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외국 언론도.

그래서 거기 대비를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장관이 이 자리에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야 미국서 그 소리를 안 꺼내지. 덜 꺼내지. 강도가 약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고맙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대비는 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이건 명백히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셨어요, 외교부와 협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내용의 같은 문제를 짚으셨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하면서 한 가지만 저도 답답해서 그냥 강조하는 뜻에서 한다면 우선 그랜드 바겐 문제도 이미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상이 세 번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앞에서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구태여 우리는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일치했다, 전적으로 공감했다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일치했다 이렇게 그냥 오바마 말 그대로 전달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 정상이 언급하지도 않은 말을 우리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외교적 결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국격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문도 봤습니다, 우리 보도도 봤고. 그런데 오바마 말 그대로 인용했어도 괜찮았을 걸 그랬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FTA 문제도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었다 이런 것은 장관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재협상의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 되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특별히 유일하게 잘 된 협상이 자동차 분야라고 그러는데 그 분야가 건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러면 아직도 미국의 진짜 자동차의 문제가 뭔지 그동안에 그렇게 공조를 강조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얘기나 내용 파악이 안 됐는지 이것 국민이 당연히 답답하거든요. 거기다 또 통상본부장께서 '다시 하면 손해 보는 협상은 안 한다' 이런 게 계속 풍기면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 없도록 더 이상 이익의 균형이 깨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PRT 팀 보내는 문제입니다. 내년 1월에, 바로 몇 달 후인데 영국에서 나토 회의에서 아프간 문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걸 장관님 물론 아시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신낙균 위원 그런데 그 방향을 보고 해도 되는데 재촉하지도 않고 요구하던 일을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서둘러서, 그리고 파병 규모도 몇백 명이라고 했다가 몇천 명까지도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게 도대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혼란을 자초하시는지 그런 게 답답한 겁니다.

나토 회의의 방향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몇 달 후인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늦은 게 아니고, 아프간의 카라자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고 그런 걸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그동안에 이게 2001년부터 유엔에서 매번 결의를 통해서…… 지금 2009년이 아닙니까? 지금 42개 국가가 다 참여하고 있는데, 자꾸 서둘렀다고 그러는데 이게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아프간의 국내정치 일정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꼭 나토라든가 이쪽의 그런 걸 타이밍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판단 또 우리의 일정대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랜드 바겐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이 있고, 오바마 스스로가 한미 간의 대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으면 이제 그 문제는 그것으로 접어 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국격을 지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참담한 심정마저 들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바로 그 문제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발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자동차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FTA라는 게 자동차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산업도 있고 농업도 있다. 그래서 한미 FTA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넓게 보자' 이런 의미에서 강조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상현 위원 지금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어떤 걸 고쳐 달라, 얘기한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는 2년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아주 세세히 세세히 다 해 가지고 양측 간에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미측의 협상대표도 이 협상이 가장 잘됐다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자랑한 겁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너희들이 자꾸, 미국에서 자동차 문제를 자꾸 꺼내면서 한미 FTA 비준을 늦추는데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한번 들어 보겠다. 한번 안을 가져와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얘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게 그것이거든요. 논의할 자세……

○윤상현 위원 그런데 재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장관님? 재협상이라는 것은 한미 FTA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이미 합의한 것은 수정할 수 없으니까……

○윤상현 위원 합의한 것을 수정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놔두고 다시 하자는 거지요.

○윤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8%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또 미국에서 우리 차에 부과하는 배기량 3000cc 이하에 대한 관세 2.5%는 바로 철폐하고 또 3000cc 이상은 3년 후에 철폐하고 이런 게 한미 FTA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협상을 한다면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2007년도 6월 30일 날 TPA 권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TPA도 위반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재협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재협상'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추가 협의'라는 것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미국 너희들이 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추가 검토의 의사 혹은 뭐 이렇게 밝힌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안 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랜드 바겐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차이가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도 완전히……

○윤상현 위원 완전한 의견 일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 나온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현재 아시다시피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를 강하게 몰아붙인 상황 아닙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시점에서 어차피 그랜드 바겐의 내용을 보면 보상이라는 게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부각되지 않습니까? 보상이 부각되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 자체를 일부러 삼간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랜드 바겐'이나 소위 말해서 '컴프리헨시브 레절루션(comprehensive resolution)'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별 차이가 아니고 완전히……

○윤상현 위원 완전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말씀대로 완전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미 관계가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최상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대원칙에는 두 분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고, 단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방안에 대해서 기타 북한을 제외한 5개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미 외교장관 간의 내년도 2+2 회담을 하겠다

는 건, 이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2+2 회담이라는 게 벌써 일본은 90년대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미 외교당국 또 국방장관이 같이 참여하는 2+2, 네 분이 참여하는 그런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북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국 내 탈북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1만 7000명에 달하고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최대 한 5~7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중국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높여 놨다라는 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한미 양 정상이 그런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유 장관께서 '오바마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식 회의입니다. 우방국 대통령에 대한 표현인데 속기록을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오바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정정하는 게 좋겠어요.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인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랬다면……

○위원장 박진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물론, 당연합니다.

○정동영 위원 '포괄적 해결책'과 '그랜드 바겐'이 완전히 같은 말이다 그러면 '포괄적 해법'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뭐 그래도 되고요.

○정동영 위원 뭐 아무 문제없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랜드 바겐'은 하나의 라벨, 거기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 그 뜻은 뭐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연설에서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브랜드화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동영 위원 박선영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보즈워스 대사가 12월 8일날 가는 것도 결국 북한하고 조율해서 6자 회담에 나오고, 결국 행동 대 행동 그런 원칙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원샷 딜(one-shot deal)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지요. 맨 처음에 용어 정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샷 딜과는 이게 다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오해가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건 지난번에 외통위에서도 원샷 딜하고 제가……

○정동영 위원 '원샷 딜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포괄적 해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토야마의 방북 보도가 나왔다가 관방장관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해교전이 났기 때문에 일본에서 원래 계획이 늦춰진 거다' 이런 후속 보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본의 북·일 관계에 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본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하토야마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접촉은 진행, 추진 중인 것 같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동영 위원 현 장관께, 지금 보즈워스도 방북하고 돌아가는데요. 그동안 죽 기다려 왔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하고 의원들 방북 이것 지금 계속 불허해 왔는데 이제는 좀 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미국 하는 것 보고 하렵니까, 아니면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것을 꼭 묶고 풀고 하는, 그래서 뭐 묶은 것은 아니고요.

○정동영 위원 아니, 묶고 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풀어야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북 문제는……

○정동영 위원 아직도 뭐 기다릴 게 있어요? 뭘 기다립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방북 문제는 그간에 죽 풀어 왔습니다.

○정동영 위원 최근에 의원들 방북 승인은 불허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김충환 위원님 신청하신 건 언제예요?

○김충환 위원 옛날에……

○정동영 위원 아, 최근 게 아니군요.

자, 의원들 방북 승인 신청하면 이제 다 해 줍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교류협력사업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잘됐고요.

유 장관님, 제가 온두라스의 한지수 양, 그것 말씀을 드려서 유 장관께서 조처를 해서 아마 대사가 오늘 대법원장한테 공식 레터를 전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사관이 본부에 건의를 했지만—신원 보증 관련해서—본부가 말하기를 '우리 정부는 정부가 개인에 대해 보증할 수 없다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는 한지수 씨 사건뿐 아니라 해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 대한 어떠한 서면 보증도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렸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서면 보증을 해 줄 수 없는 문제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개인(국내 또는 해외에서 동일함)에 대해 보증할 수 없다는 일관된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는데 이것 좀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런 원칙을 외교통상부가, 이게 대통령령입니까, 규칙입니까, 장관 명령입니까, 아니면 관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검토를 해서 적절치 않으면……

○정동영 위원 그래서 정부가 개인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게 혹시 내부에 있으면 좀 걷어내는 게 좋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쪽의 수사기록을 우리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국과수에서 그 부검한 내용을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갖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파견할 생각입니다. 현지에서 검찰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의문점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하여튼 해결될 때까지 유 장관께서 계속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물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한 분 더 계신데요. 아까 김충환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충환 위원 대체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만 그랜드 바RPS'이라고 하는 말이 컴프리헨시브 레절루션(comprehensive resolution)이다, 그것은 같은 뜻이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뭐 일괄적·포괄적 타결…… 다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충환 위원 과거에 선샤인 팔러시(sunshine policy)라고 한국에서 보통 말했는데 그것을 꼭 선샤인 팔러시라고 해야만 햇볕정책이냐, 인게이지먼트 팔러시(engagement policy) 이것도 다 같은 뜻이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집이라고 하나 하우스라고 하나 다 그게 그것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우리가 의사를 전달할 때 정말로 우리 두 대통령께서 만나서 이렇게 완전한 합의를 보고 같이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표현을 꼭 그랜드 바겐이라고 써야만 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닌 것으로 저는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양국 대통령께서 합의하고 또 뜻을 맞춘 것이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보즈워스 특사가 방북을 하게 되면 그게 양자 간에 협상을 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를 하러 가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측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마는 '그것은 미·북 양자 협상은 아니다'……

○김충환 위원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6자회담 복귀 및 9·19 공동성명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니까 보즈워스 방북이 미·북 간에 새로운 협상을 따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점에서도 볼 때는 우리가 아까 포괄적인 해결책 또 그랜드 바겐하고도 다 일치하는 범위 내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아까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재협상이냐 아니면 추가협의냐 하는 문제에 대한 개념을 재협상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추가협의라고는 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개념 정립을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문제가 있다면 뭐냐 얘기를 들어서 논의하겠다 이것이지요. 얘기 들으면 거기에 코멘트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무엇을 확산시키는 것은 협상을 하는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원칙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이지요.

○김충환 위원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 장벽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미국 측에 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세 문제에 대한 것은 자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도 말하자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량을 얼마를 확보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서 얼마를 팔아 주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WTO에 어긋나는 것……

○김충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말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말 또는 현재 교착되어 있는 한미 FTA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말씀하신 것, 그것이 국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충환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대통령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것처럼 전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한미 FTA를 조속한 시간 내에 타결해서 이것을 우리의 전체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인 결실을 이룬 회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싱가포르-중국-한국으로 이어지는 6박7일 간의 아시아 순방 중에서 한국은 체류 시간이 21시간으로 가장 짧았지만 가장 편안한 곳이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어쨌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공

동접근 방식에 완전히 의견을 일치한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6월 방미 때 제안했던 그랜드 바겐, 즉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서도 한때나마 빚어진 오해, 불협화음은 말끔하게 정리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고, 아무튼 금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법안심사 일정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 22항에 올려져 있는 윤상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선 공청회, 후 법안심사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통 폐지법률안이 지금 계류 중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통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청회 등의 일정은 추후 결정해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오늘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문학진 간사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청회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문학진 위원 법안소위에 넘기기 전에 먼저 전체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게 대체토론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공청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법안심사소위에 넘기지 말고……

○위원장 박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공청회 문제는 여야 간사께서 협의를 해 주시고 오늘 일괄해서 이것을 법안소위에 넘기고 상임위 대체토론을 법안소위 한 다음에 또 심도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후에 하는 내용이 다를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서 한 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문학진 위원님!

○문학진 위원 외교부장관님, 아까 대통령 어제 말씀과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그것을 해석하는 얘기들과…… 요즘 말장난 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아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어제 대통령의 얘기, 이야기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그 얘기하고 논의하고 논의 또는 협의하고 협상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한번 개념 규정을 해 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얘기를 더 해볼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그냥 격의 없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더 해볼 자세가 있다는 것은 그게 곧 협의 또는 논의이고 조금 더 포멀하게 되면 그게 곧 협상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언어라는 것은 자기 머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해석이 달라지겠지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재협상, 그런 협상이라는 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리는 것이고 아마 항상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뜻이 전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을 했으면 그것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그것을……

○문학진 위원 그런데 정부의 해명이 이게 더 꼬이게 만들고 있거든요. 각종 언론 보도를 보세요. 이게 사실상의 재협상 또는 추가 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분분하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정부가 해명한 것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 더 여쭤 볼까요? 지식경제부에서 최근에 자동차 부문 추가 요구사항이 뭐냐 미국에다가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 쪽에서 문서를 열람시켜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금시초문입니다.

○문학진 위원 그리고 이용준 차관보 나와 계시지요?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장관님, 이 차관보가 아프간 현지 실사단장으로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25일에 전체회의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아프간실사단의 실사결과보고를 우리 상임위에서 들었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알겠습니다.

실사단 보고 관련해서 김충환 간사님, 문학진 간사님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우리끼리는 합의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진 합의 보셨습니까?

○김충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진 25일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때 실사단에서 공개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무래도 비공개로 하면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원장 박진 공개로 하실 수 있는 내용은 공개로 해 주시고……

○문학진 위원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시지요.

○김충환 위원 지금 실사단 조사한 내용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추가로, 아까 송영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국방부 쪽 조사도 있기 때문에 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로 하고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판단을 하셔서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비공개로 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김충환 간사님 괜찮겠습니까?

○김충환 위원 예.

○위원장 박진 그러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 주시고 비공개 부분이 있으면 외교부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기 때문에, 오찬 시간인데 계속하는 게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김충환 의원 외 32인 발의)

1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신낙균·최영희·김재균·강창일·송영길·김종률·양승조·유성엽·이용섭·문희상·김성곤·장세환·김성순·정세균·김영진·이성남·서갑원·강기정·송민순·문학진·천정배·김상희·김재윤·김춘진·최문순·전혜숙·박은수·박선숙·이해봉·안민석·박주선·정장선 의원 발의)

1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원유철·배영식·김정권·유승민·이한성·조윤선·임두성·이종혁·홍정욱·배은희·고승덕·정진석·김성태·정병국·박선영·정옥임·이범관·신영수 의원 발의)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강기정·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세연·김영진·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영아·박은수·박주선·백재현·서갑원·송영길·신낙균·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윤근·유선호·유성엽·이미경·이성남·이용경·이용삼·이용섭·이윤석·이윤성·이인기·이종혁·정하균·조배숙·조승수·주승용·최규성·최영희 의원 발의)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두아 의원 대표발의)(이두아·임동규·이성헌·이한성·김효재·조원진·이해봉·원희룡·조전혁·손범규·신상진·김성태·박준선·강용석 의원 발의)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김옥이·송민순·공성진·김용구·김영진·강명순·김장수·신상진·이

계진·이경재·김창수·이한성·강석호·이종구·안효대·이해봉·임동규·권영세·정진석 의원 발의)

17.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강기정·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세연·김영진·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영아·박은수·박주선·백재현·서갑원·송영길·신낙균·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윤근·유선호·유성엽·이미경·이성남·이용경·이용삼·이용섭·이윤석·이윤성·이인기·이종혁·정하균·조배숙·조승수·주승용·최규성·최영희 의원 발의)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박선숙·김영진·강창일·김춘진·우제창·김성순·김희철·김영록·박기춘·김재윤 의원 발의)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강운태·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영진·김우남·김효석·노영민·박주선·안규백·우윤근·이용삼·전혜숙·주승용·최규성·최철국·최인기 의원 발의)

20.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강창일·곽정숙·권영길·김상희·김영록·김영진·김우남·김재윤·김종률·김춘진·문국현·문학진·박선숙·박주선·박지원·백원우·변재일·송영길·신낙균·신학용·유성엽·유원일·이낙연·이미경·이시종·이정희·조배숙·조승수·최규성·최영희·최인기·홍희덕 의원 발의)

2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신학용·우제창·유성엽·원혜영·박주선·양승조·박선숙·이시종·이미경·송민순·김동철·문학진·김종률·박은수 의원 발의)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석호·강용석·구상찬·권경석·권영진·김금래·김동성·김선동·김성회·김영우·김옥이·김을동·김재윤·김정권·김정훈·김창수·김충환·김태원·김태환·김효재·나경원·박보환·박순자·박준선·서병수·성윤환·손범규·심재철·안경률·안형환·원희목·유일호·이범관·이윤성·이종혁·이철우·이춘식·이한성·장광근·정두언·정병국·정옥임·정진석·정해걸·조전혁·조진형·주광덕·진성호·진수희·차명진·최구식·허원제·현경병·현기환·황진하 의원 발의)

(12시26분)

○위원장 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이미경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정부가 제출하고 송민순 의원, 이두아 의원, 김충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김성곤 의원과 김영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1항 신낙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부터 22항까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요약 검토보고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민순 의원·김충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한 간의 교역 및 경협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제도를 규정하고 교역·경협사업 추진 중 기업경영 외적인 문제로 인한 손실보조 또는 보험제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원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남북관계 경색 등 기업의 경영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적시 보상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과 권영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안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상설화하는 것이고,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동 지원단의 상설화와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교육 의무화 관련입니다.

개성공단 현지 기업의 임직원 대상의 안전교육의 의무적 실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방북교육은 그 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 내용이나 체계성도 미흡하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박진 위원장, 김충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신변안전 정보의 통지와 관련하여 권영세 의원님 대표발의안 제15조의3은 “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보호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상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원단이 10월 5일자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조직도 한시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개성공단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지원단을 상설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단의 상설화는 장기적으로 인력과 조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이 조직을 한시적으로 두고 지금까지 운용해 온 취지와 상설화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설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송민순 의원, 이두아 의원,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민순 의원안은 북한이탈주민기금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의원님이 역시 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기금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기금법안 검토 보고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두아 의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항에서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여 보호대상자가 독립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기존의 사회빈곤층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그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원칙의 추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들이 이러한 개정안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김충환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민간단체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이를 재단으로 확대·개편할 경우 민간단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착지원사업의 영역을 확대·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재단의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에 비례하여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의 설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신규 기금의 설치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재정당국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동 법률과 같은 내용으로 기금법안의 기금 사용 대상 범위를 수정할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1항은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은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국제교류기금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쪽입니다.

김성곤 의원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남북합의서의 내용을 심의하여 그 내용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 해당 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체결된 합의서를 국회가 사전에 국회 동의 대상 여부를 심의하여 본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합의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정부가 국회의 동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조약의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안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북한에 대한 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남한의 쌀을 북한에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생존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주민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정례적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내 쌀 수급 동향을 보면 매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상당 부분의 쌀 재고로 인해 우리 농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북한에 대해 국내 재고 쌀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쌀 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국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의 정례화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나 국민여론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측면이 있

으며, 나아가 실제 지원도 남북 당국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대북 지원을 통한 국내 쌀 수급 조절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북 지원을 통한 쌀의 재고량 감소가 결과적으로 국내의 쌀 수급량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대북 지원은 인도적인 지원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국내 쌀 수급 조절 문제는 대북 지원과 별개로 국내 쌀 수요기반 확대 등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재원 조달 방식 관련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외국산 쌀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국내산 쌀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충당하려고 하는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신낙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통일교육' 정의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통일교육도 이를 전제로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는 통일교육의 정의에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고 있는 금번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통일교육' 정의 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법안 심의 시 이러한 의견도 고려하여 개정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의 강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교육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어느 수준까지 구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이 요건을 구체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등과는 관련 없이 대학과 같이 교육 여건이 우월한 시설로 집중 선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기준의 추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우선 위촉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인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회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위촉' 규정의 삭제는 지방의회 의원들 중 누구를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위촉 기준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 제10조제3호에서는 현행 정당의 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자문위원 추천권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 구성에서 민주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의 '지도급 인사'의 의미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동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하신 의원님과 정부 측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석 위원 강기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정례적인 쌀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북한 생존권 확보라는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 쌀 지원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본질적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지원하는 것이 해법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쌀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이 돼야 되는지는 우리가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 법안은 쌀 지원을 정례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례화한다는 것은 결국 쌀 지원에 대한 의존을 더 키울 것이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쌀 생산, 농업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검토 이후에 우리가 생산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으로 우리가 검토가 돼야지 그야말로 식량 자체만을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국내 생산 쌀의 수급조절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로 해결돼야 될 문제이지 북한이 어떤 해결의 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두 가지 지적을 저는 대체토론의 요지로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 1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미경 위원, 남경필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과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김충환	남경필	문학진	박상천
박선영	박주선	박 진	송민순
송영선	신낙균	윤상현	이범관
이상득	이춘식	정동영	정의화
정진석	진 영	홍정욱	황진하

○출장 위원(1인)

구상찬

○청가 위원(2인)

정몽준 정옥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허영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장관	현인택
기획조정실장	김호년
통일정책실장	김천식
정세분석국장	양창석
교류협력국장	김남식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최보선
남북회담본부장	엄종식
통일교육원장	홍재형
남북출입사무소장	문대근
남북피해자지원단장	서성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	유종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윤미량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제1차관	신각수
제2차관	천영우
차관보	이용준
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동북아시아국장	조태영
북핵외교기획단장	황준국

조 정 기 획 관 최 연 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 사 장 임 성 준
기 획 이 사 김 성 엽
사 업 이 사 한 영 희
한국국제협력단
이 사 장 박 대 원
이 사 장 현 식
재외동포재단
이 사 장 권 영 건
기 획 이 사 금 병 목
사 업 이 사 강 남 훈

○소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소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정진석	정의화	예산안·결산·기금 심사 소위원회	한나라당	09. 11. 16
구상찬	이범관			

○의안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2 송영선·이성헌·한선교·김을동·심재철·이명수·김우남·이정선·정영희·노철래 의원 발의)

11월 13일 회부됨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2009. 11. 13 김춘진·강명순·최재성·원유철·이정선·정미경·조전혁·진성호·박준선·권성동·김충조·정의화·이경재·박기춘·전혜숙·홍사덕·김유정·박상천·최인기·김영록·주승용·허천·정장선·박선숙·김성순·백원우·안규백·서종표·김상희·김동철·이성남·조영택·강봉균·이시종·최규성·조정식·오제세·최철국·김재균·변재일·김영진·이미경·이강래·우윤근·우제창·백재현·박주선·박은수·김효석·김소남·김학용·이낙연·안민석·손숙미·이애주·유재중·이사철·김태원·정해걸·신상진·최구식·윤석용·안효대·유기준·신학용·김금래 의원 발의)

11월 16일 회부됨